

마포 에피트 어바닉 오피스텔 분양광고



- 마포 에피트 어바닉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55-3111)등을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행사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최초 **분양광고일(2024.10.10.)**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타입별 1인당 1건, 총4건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타입 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4년 10월16일(수) 09:00 ~ 17:30	2024년 10월22일(화) 16:00 이후	2024년 10월27일(일) ~ 10월29일(화)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마포 에피트 어바닉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오피스텔	○	○	○	○	○	○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분양신고-9197호(2024.10.07.)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도시환경협의-건축허가-1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원

■ 신탁업자(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 코리아신탁(주) / 시행위탁자 : (주)인사이트투 / 시공사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4,583.600㎡

• 건축물 연면적 : 50,429.0726㎡ (오피스텔 : 22,956.7977㎡)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5층 ~ 지하2층(주차장, 기전실,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창업센터),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기전실, 로비), 지상2층(부대복리시설, 기전실, 베이비시터하우스, 전자도서관, 관리사무소), 지상3층 ~ 지상23층(오피스텔), 옥상층(부대복리시설)

• 공급규모 : 지하5층 ~ 지상24층 1개동, 오피스텔 총 203실

• 주차대수 : 총 384대 (오피스텔 : 185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 5의 2 및 건축법 제 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임

•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VII-0.246g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VII)등급 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0.246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7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m², 실)

주택관리번호	타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2024950060	42H	34	42.4750	15.7415	58.2165	25.3001	83.5167	7.3721
	42H-A	4	42.4750	15.7415	58.2165	25.3001	83.5167	7.3721
	59G	152	59.2000	21.2287	80.4287	35.2623	115.6910	10.2749
	59G-A	13	59.2000	21.2287	80.4287	35.2623	115.6910	10.274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 표기)	동별	라인	층 구분	해당 실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자정일	
										2025.04.28	2025.11.27	2026.06.29	2027.03.02	2027.07.27	2027.12.27		
42H	102동		1	7~16층	10	427,279,320	250,018,800	25,001,880	702,300,000	70,230,000	70,230,000	70,230,000	70,230,000	70,230,000	70,230,000	70,230,000	210,690,000
			5	3층	1	444,192,840	259,915,600	25,991,560	730,100,000	73,010,000	73,010,000	73,010,000	73,010,000	73,010,000	73,010,000	73,010,000	219,030,000
			1	17~21층	5	446,626,440	261,339,600	26,133,960	734,100,000	73,410,000	73,410,000	73,410,000	73,410,000	73,410,000	73,410,000	73,410,000	220,230,000
			5	4~16층	13	463,479,120	271,200,800	27,120,080	761,800,000	76,180,000	76,180,000	76,180,000	76,180,000	76,180,000	76,180,000	76,180,000	228,540,000
42H-A	102동		5	17~21층	5	482,826,240	282,521,600	28,252,160	793,600,000	79,360,000	79,360,000	79,360,000	79,360,000	79,360,000	79,360,000	79,360,000	238,080,000
			1	22층	1	478,141,560	279,780,400	27,978,040	785,900,000	78,590,000	78,590,000	78,590,000	78,590,000	78,590,000	78,590,000	78,590,000	235,770,000
			1	23층	1	480,636,000	281,240,000	28,124,000	790,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237,000,000
			5	22층	1	515,375,640	301,567,600	30,156,760	847,100,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84,710,000	254,130,000
59G	102동		5	23층	1	517,809,240	302,991,600	30,299,160	851,100,000	85,110,000	85,110,000	85,110,000	85,110,000	85,110,000	85,110,000	85,110,000	255,330,000
			2	7~16층	10	605,601,360	354,362,400	35,436,240	995,400,000	99,540,000	99,540,000	99,540,000	99,540,000	99,540,000	99,540,000	99,540,000	298,620,000
			11	7~16층	10	619,107,840	362,265,600	36,226,560	1,017,600,000	101,760,000	101,760,000	101,760,000	101,760,000	101,760,000	101,760,000	101,760,000	305,280,000
			10	7~16층	10	622,454,040	364,223,600	36,422,360	1,023,100,000	102,310,000	102,310,000	102,310,000	102,310,000	102,310,000	102,310,000	102,310,000	306,930,000
			6~9	3층	4	625,800,240	366,181,600	36,618,160	1,028,600,000	102,860,000	102,860,000	102,860,000	102,860,000	102,860,000	102,860,000	102,860,000	308,580,000
			2	17~21층	5	632,553,480	370,133,200	37,013,320	1,039,700,000	103,970,000	103,970,000	103,970,000	103,970,000	103,970,000	103,970,000	103,970,000	311,910,000
			11	17~21층	5	645,999,120	378,000,800	37,800,080	1,061,800,000	106,180,000	106,180,000	106,180,000	106,180,000	106,180,000	106,180,000	106,180,000	318,540,000
			10	17~21층	5	649,345,320	379,958,800	37,995,880	1,067,300,000	106,730,000	106,730,000	106,730,000	106,730,000	106,730,000	106,730,000	106,730,000	320,190,000
			3~4	6~16층	22	632,553,480	370,133,200	37,013,320	1,039,700,000	103,970,000	103,970,000	103,970,000	103,970,000	103,970,000	103,970,000	103,970,000	311,910,000
			6~9	4~16층	52	652,752,360	381,952,400	38,195,240	1,072,900,000	107,290,000	107,290,000	107,290,000	107,290,000	107,290,000	107,290,000	107,290,000	321,870,000
59G-A	102동		3~4	17~21층	9	659,444,760	385,868,400	38,586,840	1,083,90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325,170,000
			6~9	17~21층	20	679,643,640	397,687,600	39,768,760	1,117,100,000	111,710,000	111,710,000	111,710,000	111,710,000	111,710,000	111,710,000	111,710,000	335,130,000
			2	22층	1	676,845,000	396,050,000	39,605,000	1,112,500,000	111,250,000	111,250,000	111,250,000	111,250,000	111,250,000	111,250,000	111,250,000	333,750,000
			2	23층	1	680,252,040	398,043,600	39,804,360	1,118,100,000	111,810,000	111,810,000	111,810,000	111,810,000	111,810,000	111,810,000	111,810,000	335,430,000
			11	22층	1	690,594,840	404,095,600	40,409,560	1,135,100,000	113,510,000	113,510,000	113,510,000	113,510,000	113,510,000	113,510,000	113,510,000	340,530,000
			10	22층	1	694,062,720	406,124,800	40,612,480	1,140,800,000	114,080,000	114,080,000	114,080,000	114,080,000	114,080,000	114,080,000	114,080,000	342,240,000
59G-A	102동		11	23층	1	694,062,720	406,124,800	40,612,480	1,140,800,000	114,080,000	114,080,000	114,080,000	114,080,000	114,080,000	114,080,000	342,240,000	
			10	23층	1	697,530,600	408,154,000	40,815,400	1,146,500,000	114,650,000	114,650,000	114,650,000	114,650,000	114,650,000	114,650,000	343,950,000	

	3~4	22층	2	704,405,520	412,176,800	41,217,680	1,157,800,000	115,780,000	115,780,000	115,780,000	115,780,000	115,780,000	115,780,000	115,780,000	347,340,000
	6~9	22층	2	725,151,960	424,316,400	42,431,640	1,191,900,000	119,190,000	119,190,000	119,190,000	119,190,000	119,190,000	119,190,000	119,190,000	357,570,000
	3	23층	1	707,934,240	414,241,600	41,424,160	1,163,600,000	116,360,000	116,360,000	116,360,000	116,360,000	116,360,000	116,360,000	116,360,000	349,080,000
	6~9	23층	2	728,559,000	426,310,000	42,631,000	1,197,500,000	119,750,000	119,750,000	119,750,000	119,750,000	119,750,000	119,750,000	119,750,000	359,250,000

■ 공통사항

- 본 오피스텔은 총 203실 4개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본 공급금액은 타입, 향, 층별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미포함 금액이며,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공급계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에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주차장은 총 384대(근린생활시설 18대, 오피스텔 185대, 공동주택 181대 포함)로 설계되었습니다.(법정주차대수 342.89대)
- 전체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체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관리사무실 등)은 실별 전용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오피스텔의 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호실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로 시설별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별 대지지분을 분할하였고, 오피스텔 각 호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전체 대지지분을 각 호실별 전용면적비율로 분할하였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T.1555-3111)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측량)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사업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지정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 '(주)인사이트투'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수분양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실입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도로교통, 지하철 등 철로운송수단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일조권 또는 조망권의 침해, 전자파, 전자기장에,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향후 정부의 정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그리고 해당 사업관계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자, 시행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므로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샘플하우스 면적 및 높이는 실제 시공면적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4.10.10.)**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

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타입별 1인 1건만 청약이 가능하며, 총 4개 타입 4건 청약이 가능하나, 동일인이 동일타입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자의 동·호실은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 무작위추첨으로 선정되며, 시행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행사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층·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09:00 ~ 17:30	2024년 10월 22일(화) 16:00 이후	2024년 10월 27일(일) ~ 10월29일(화) (10:00~16:00)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마포 에피트 어바닉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IM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 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IM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00원 (금 일천만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IM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1부(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 창구접수는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IM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시행사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시행사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시행사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

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4.10.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시행사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시행사 및 신탁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4년 10월 22일(화)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총·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시행사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계약기간 내 분양대금납부계좌로 계약금납부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제한 없이 임의로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시행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4년 10월 27일(일) ~ 10월29일(화)	10:00 ~ 16:00	마포 에피트 어바닉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	계약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시행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분양대금,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분양대금	아이엠뱅크	504-10-606070-0	코리아신탁(주)	입금 시 동,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1011001홍길동)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아이엠뱅크	504-10-606071-7	코리아신탁(주)	

- 분양대금,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사 및 신탁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호수 및 수분양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위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1001호" 홍길동 →1011001홍길동)
-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계약금,중도금에 한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층-호실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행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시	1. 계약금(무통장 입금증/현금수납 불가) 2.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인터넷 청약시 생략 가능 3.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4.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5.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 외국인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가능)
법인 계약시	1. 계약금(무통장 입금증/현금수납 불가) 2.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4.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5.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6. 법인 등기부등본 1통 7.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 3자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2.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건본주택 내 양식 비치) 3.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및 인장 4. 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공통 사항	1. 인지세 납부확인증(전자수입인지) : 1천만원 이하(면제)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4.10.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이 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 상기 증명서류 외 별도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내용을 분양 받는자 전원에게 알립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시행사가 수의계약으로 분양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시행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상,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의 배치 구조 및 동 층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설비, 상하수도, 중수, 경관조명, 가로등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추후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됩니다.
- 추후 분양사업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호실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호실 관리비(전기, 수도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 부대 및 복리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에 따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로 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며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시 납부방법 고지 예정입니다.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로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를 대납할 경우, 제반경비 전액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시행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현금으로 직접 납부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시행사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시행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 제한 등)에 의한 대출이 불가 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시행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수분양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수분양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관계자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준공후 담보대출 전환시 DSR 적용에 따라 개인별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사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시행사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기타 계약자 안내

■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각 1/2씩 부담하여 종이문서용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100%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정부수입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오피스텔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면제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은 2028년 07월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예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행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0의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주식회사 인사이트투과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 및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 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 조의 특약사항은 분양계약의 다른 일반조항 및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보다 우선하며,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인사이트투과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인사이트투과 수분양자는 인지하고 동의한다.
 2.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인사이트투과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시행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인사이트투과 부담한다.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인사이트투과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4.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인사이트투 또는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계약자는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7.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인사이트투 또는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8.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인사이트투과 수분양자간에 또는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와 수분양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9. 본 관련사항의 내용은 본 분양목적물 관련 홍보물, 입주자모집공고 등 어떠한 내용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본 제공 품목(무상)			
타입	구분	품목	비고
공통	현관중문	중문	-
	전기쿱탑	2구인덕선+1구하이라이트: 삼성	
	에어컨	59G : 거실+침실1+침실2 42H : 거실+침실	
	침실1	불박이장	
59G	침실2	불박이장	42H 해당없음

※ 본 오피스텔의 기본 제공 품목은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기본 제공 품목 미설치 요구 및 미설치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VI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1. 인테리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타입	내용	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6.06.29	잔금(80%) 입주시
현관/거실 스타일업	59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면 : 벽지 LPM마감 현관가구도어 (은경도어 1개소+하부 조명 미설치) 바닥 : 기본마루 아트월 : 포셀린타일(400X800) 조명 	59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면 : 시트판넬(현관입구, 거실창호 부위, 쇼파 뒷 벽, 복도 일부) PET마감 현관가구도어(브론즈유리도어+하부 조명 설치) 바닥 : 스톤플로링 아트월 : 세라믹타일(1,200X1,810, 680) 조명 	9,000,000	900,000	900,000	7,200,000
	42H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 : 기본마루 아트월 : 포셀린타일(400X800) 조명 거실 : 기본형 조명+기본형 통합스위치 	42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 현관 : 신발장 하부 간접등 거실 : 거실D/L(디밍)+거실 간접등(등박스 포함) + 옵션형 통합스위치(디밍시스템) 복도 : 복도D/L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 추가선택품목 옵션 미선택시, 거실 우물천장 크기가 줄어들며, 간접등 설치용 등박스가 미설치 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 선택 시, 거실D/L만 디밍이 가능한 조명으로 설치되며, 옵션형 통합스위치의 디밍시스템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다른 조명은 디밍 기능)

없음)

- 추가선택품목 옵션 선택 시, 현관 신발장 하부 간접등은 현관원형매입센서등과 함께 동작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가구(LPM마감, 신발장 하부 간접등 미설치)로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 미선택 시 바닥마감재는 기본마루로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 미선택 시 거실아트월은 포셀린타일(400X800)로 설치됩니다.
- 평면 형태에 따라 42H는 현관팬트리 유리도어, 시스템 선반으로 설치되며, 하부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 미선택 시, 가구도어 형태 및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 현관팬트리 내 시스템 선반은 기본 설치됩니다.

구분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타입	내용	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6.06.29	잔금(80%) 입주시
주방/다용도 실 스타일업	59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 -LPM마감 주방가구+벽타일(300X600)+상판MMA+기본싱크볼+기본수전 	59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 -PET마감 주방가구+세라믹타일(상판/벽)+사각싱크볼+터치식수전 	8,000,000	800,000	800,000	6,400,000
	42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PM마감 코너키친장+LPM여닫이장 -아일랜드하부 일반도어 -다용도실 PVC창호+시스템선반(세탁기상부) 미설치 • 조명 : 기본형 조명 • 가전 : 미 선택시 가구수납(도어),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 콘센트 설치 	42H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T마감 코너키친장+조명형유리오른장(59G만 해당) -아일랜드 하부 유리장(42H만 해당) • 다용도실 : AL창호도어 + 시스템 선반(세탁기 상부)설치 • 조명 : 주방레일등/복도D/L(59G), 주방사각매입등/아일랜드팬던트(42H) • 가전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 추가선택품목 옵션 선택시, 주방레일등은 탈부착이 가능하여 원하는 위치에 이동설치가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 선택시, 특화조명은 디밍 기능이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주방(LPM마감, 일반타일(600X300), 일반싱크볼, 일반수전, 유리장식장 미설치)로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 미선택 시 PVC창호도어, 시스템 선반 미설치로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59G의 기본형 오픈장은 조명 및 유리 미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42H의 기본형 아일랜드 하부장에는 일반 LPM도어 적용, 조명 미설치됩니다.
- 다용도실 창호는 미서기도어 형태로 설치됩니다. (42H 해당없음)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다용도실 창호가 AL창호로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세탁기상부에 시스템선반이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 미선택 시, 가구도어 형태 및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구분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타입	내용	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6.29	입주시
침실/욕실 스타일업	59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식세면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M마감 세면대가구+비조명형거울+상부장 없음+하부장 디자인변경(간접조명 미설치)+상판:MMA+벽타일(300*600)+파티션 미설치)+ 일반형 수건걸이 • 세면대 측벽 : 벽지 • 욕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타일(600X300), 바닥타일(300X300) • 욕실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타일(600X300), 바닥타일(300X300) 	59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식세면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T마감 세면대가구+조명형거울+상부장+ 하부장(간접조명 포함)+상판:엔지니어드스톤+벽스톤보드+파티션 설치 (42H 파티션 해당없음)+고급형 수건걸이 • 세면대 측벽 : 시트판넬 • 욕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타일(600X600), 바닥타일(300X300)) • 욕실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타일(600X600), 바닥타일(300X300)) • 욕실 고급형 도기/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 세대 환기시스템 :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힘펠] •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42H 제외) : 기본형+욕실장 하부 간접등 - 건식세면대 : 건식세면대D/L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42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 기본형 도기/수전 • 세대 환기시스템 : 기본형 전열교환기 • 환기시스템 : 기본형 환기시스템 (공기청정모드 없음) •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42H 제외) : 기본형 조명 - 건식세면대 : 기본형 조명 	42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 기본형 도기/수전 • 세대 환기시스템 :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힘펠] •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42H 제외) : 기본형+욕실장 하부 간접등 - 건식세면대 : 건식세면대D/L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 추가선택품목 옵션 선택시에도 특화조명은 디밍 기능이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 미선택 시 건식세면대는 기본형 건식세면대(LPM, 비조명형거울, 상부장 없음, 하부장디자인 변경, MMA상판, 파티션 미설치)로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 미선택 시 욕실1,2는 기본형욕실(디자인변경) : 벽타일(600X300), 바닥타일(300X300)으로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형욕실 벽/바닥 타일은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 불박이장 좌우측면 및 커튼박스 시공 디테일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시 세면대 측벽 시트판넬 시공부위는 평형별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전기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타입	내용	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6.29	입주시
워시타워	59G	미 선택시 미설치(설치공간 제공)	59G	LG 13kg세탁/10kg건조 일체형 (W10EGN)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42H		42H					

구분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타입	내용	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06.29	입주시
냉장고	59G	미 선택시 미설치(설치공간 제공)	59G	삼성 비스포크4도어 키친핏 615L (RF60C9013AP)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42H		42H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관련 유의사항

■ 가전 및 조명 관련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욕실 스타일업 옵션 관련

-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에는 비데일체형 양변기, 고급형 세면기 및 수전이 설치됩니다. (건식세면대의 세면기, 세면수전 포함)
- 유상옵션 미선택 시, 욕실에는 기본형 도기/수전이 설치되며 비데는 일부욕실(59G타입 욕실2, 42H타입 욕실)에만 분리형으로 설치됩니다.
- 욕실에 액세서리(수건걸이, 휴지걸이, 코너선반) 및 욕조(욕실1)는 유상옵션 선택유무와 관계없이 기본형으로 동일하게 설치됩니다. (건식세면대의 수건걸이 포함)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은 전열교환기에 공기청정모드가 포함되며, 실내 공기질센서가 추가됨에 따라, 거실에 설치되는 컨트롤러는 기본형과 다른 모델로 설치됩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작동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필터교체

■ 전체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바랍니다.
- 설치 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전기설비마감자재(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콘센트류, 스위치류 등)의 개수, 타입, 배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 하시기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상세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 선택사항으로 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VII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승인된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시 사업부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합병·합필이 되어 지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다위실상으로 수입인지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을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소수점 4째자리까지 기재하였습니다.)
- 호실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엔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시행사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단위실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및 난간 형태 및 색상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입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조경면적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율을 면적을 타입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경미한 범위내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발코니 확장 및 발코니 외창호 설치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외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팸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타입별 단위실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단위실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42H, 59G타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42H, 59G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가구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실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단위실 내부에 설치된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내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우수유입에 따른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됩니다.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내부공간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발코니 외부 난간, 단위실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한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흡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통합스위치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보일러 등은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실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공기청정기능없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통합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 및 입출차 차단기는 연출된 것으로 실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는 본공사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주동계획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 (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단지 배치 및 동별,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단위실 및 특정단위실은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단위실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단위실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단위실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단위실은 필로티 등 공동개방공간을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실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재활용 보관소 포함)은 1개소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단위실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단위실은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단위실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셔야 합니다.
- 단지외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및 소방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단위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VII-0.246g 입니다.
-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뿔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외벽부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주동 축벽 문양,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실/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동 축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3층 일부 단위실에는 하부층의 구조차이로 인한 테라스 계획으로 방법을 위한 단위실 별 칸막이 벽이 설치되며, 재질 및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붕에는 입주민 전용의 특화공간이 계획되며, 상층부 단위실은 이로인한 소음 등의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의 폭, 경계석 위치, 형태, 회차동선, 회전반경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내부에는 레벨 차이로 옹벽, 조경석 쌓기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구간, 높이, 형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계단과 경사로의 레벨, 형태, 마감, 난간 높이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 (설비 환기구) 의 노출이 있으며, 보행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1층에 공개공지 2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대지안의 공지 구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조경공간 계획에 따라 수전이 설치될 경우(개수대 등), 동절기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환경에서는 사용 제한 및 드레인 작업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하며, 동파 시 세대에 공급되는 수도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기에 노출되는 수전또한 동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지 내 조성되는 공개공지의 디자인, 식재 배치, 시설물, 포장 등은 인허가의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 형태, 색채, 마감, 규격,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은 지하 1층 선근, 지상 1,2,3층, 지붕층 옥상에 조경 식재, 시설, 포장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인허가의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과 인접한 단위실은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시설은 공용시설로 개별단위실이 점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의 수종, 규격, 식재 위치는 인허가의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단위실에 일조와 조망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차량 활동구역 및 에어매트 주변에는 소방구조활동을 위하여 수목 식재가 제한되며, 준공시 소방점검 의견에 따라 식재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수목의 생육을 위해 수목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면적, 시설물 및 포장의 형태, 색채, 마감, 패턴, 위치, 규격 등은 인허가의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1층에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규모, 위치 등은 인허가의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2층에 개방형라운지 (카페 그린하우스) 및 조경공간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인허가 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조경공간(펫플레이그라운드, BBQ다이닝, Fire Place, 키즈 플레이존, 휴게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인접단위실에는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조경공간 계획에 따라 수전이 설치될 경우(개수대 등), 동절기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환경에서는 사용 제한 및 드레인 작업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하며, 동파 시 세대에 공급되는 수도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기에 노출되는 수전또한 동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지 내 놀이시설, 휴게시설, 관리시설, 옥상조경 등의 조경시설 인접단위실에는 소음, 진동, 시야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설치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볼라드등, 수목투사등, 포인트조명 등 각종 옥외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단위실은 빛의 산란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경관조명의 위치, 사양 및 수량 등은 실시설계 및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수목 고사, 시설물 및 포장의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정화조는 인허가,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일부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덕트 및 환기시설이 해당동의 단위실 인근 공용부PD 및 외벽, 옥상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계 후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청소는 관리 주체의 의무임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기능상실, 냄새, 환경 민원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 본 단지는 아파트, 업무시설,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은 366대로 구성되며,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주차장은 18대로 별도 계획 함.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지하2~5층 주차장에 설치(급속 2대, 완속 10대)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공용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본 단지의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남측에 위치하며, 인근 저층 단위실은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3층~지하 5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3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진출이 불가 함으로 견본주택에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 주차장에는 결로, 화재, 분진 등으로 인한 환기 및 예방의 목적으로 환기덕트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2층의 주차장 주출입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2층 이하는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각동 지하출입구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음.
-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위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음.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저수조, 기계실 등 결로발생 확률이 높은 공간에 대해서는 추가 하자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 바닥의 도장 등 마감공사를 미시공 할수도 있음.

- 주차장 이용 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해 주차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지하 2층 주차장을 주간에는 비주거 시설 이용자가 사용하며 야간에는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 부대복리시설 관련

-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집기, 비품, 운용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등은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용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통신시설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운용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입주자)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한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 혹은 이용객의 단지 내 진입이 불가피하며, 향후 분쟁발생 시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관리규약에 의해 분쟁사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 ②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샤워장), 입주자 회의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계획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지상1층
 -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 지하2층
 - 펌프실, 저수조(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용) : 지하5층
 - 주차장 램프 : 단지 남서측
 - 어린이놀이터 : 지붕층
-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미확정이며, 추후 개별 분양으로 운영되는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트랩등을 설치(입주자 부담)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인접 점포 및 단위실에서는 냄새,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2층은 바닥-석재 및 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 타일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각 실의 천정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본 시설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지하2층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외 일부는 기부채납시설로 귀속기관과의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변경 및 입주민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와 기부채납시설 및 상가의 주차는 지하층에만 가능하며, 인허가 협의를 통해 관청과 용도별 주차면의 구분은 특정하지 않음으로 결정된 바,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평면, 가구 및 마감재

- 견본주택 건립단위실인 42H, 59G타입과 단위실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

료(분양 카달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층 오피스텔 단위실의 천장고는 2,49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22층 및 23층 오피스텔 단위실의 천장고는 3,79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확장 불가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타입별 단위실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타입별/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별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실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
- 각 실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오피스텔의 특성상 향후 층간/단위실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실외기 및 보일러 외 피난 동선에 방해가 되는 다른 물품을 적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단위실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세탁기 설치공간의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도어를 탈거해야 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친환경 스톤플로링,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탁기 설치공간/발코니/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등)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실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욕실, 발코니, 세탁기 설치공간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실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엔지니어드스톤의 제조사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친환경 스톤플로링 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건립타입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감재(친환경 스톤플로링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과 무관합니다.
- 단위실 내 바닥재인 강마루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 각 단위실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타입에 따라 침실 창호 크기가 다르게 설계 되었습니다.
- 주방 상판 싱크대 하부에 설치되는 물끓기 홈은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길이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화장실은 습식공법(조적)에서 UBR시스템(건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따라서 단위실 공급면적이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 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창호 관련

-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용압을 고려하여 단위실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22층, 지상23층 단위실의 외창호는 AL창 THK24로이복층유리가 적용되며, 상부에 픽스창이 추가됩니다.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실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외부난간은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G타입 침실1, 42H타입 거실의 발코니 출입측 창호에는 배연창이 적용되며, 배연창의 적용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연창이 적용되는 실 및 창짝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해당 창짝을 강제 개폐시 관련 장치가 파손됨으로 비상시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잠금장치 또한 설치 불가합니다.
- 지상3층~11층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특정 단위실에 소방관진입창이 적용되며, 해당 창호에는 소방관진입창 표시가 설치됩니다.
- 소방관진입창의 설치 단위실은 본 공사시 관청 및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포대로 및 10m도로측 발코니의 유리난간에는 BIPV가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위치 및 유리의 색상, 사양, 투과율, 난간의 디자인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은 자동루버로 설치되며, 형태 및 사양, 색상, 작동방식 등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기계,전기,통신 설비 관련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해당사항없음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지상층(지상2층 EPS/TPS, 지상12층 통신실, 지상14층 EPS/TPS) / 지하층(지하1층 EPS/TPS, 지하3층 EPS/TPS)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방범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내부에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지상 개폐기, 패드, 전주, 변압기, 맨홀 등)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맨홀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특정 단위실은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고, 시설물의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부 동 및 일부 층은 주동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리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실 평면 배치와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단위실은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상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부 단위실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인접한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단위실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 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 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이사 단위실의 전용 이용 또는 일부 시간대 혼잡으로 인하여, 대기시간 지연 및 사용 불가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 등은 각 동의 층수 및 단위실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동 등의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우수조/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장비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배연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에 초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등의 D.A, 부대시설의 실외기 시설,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 등에 의해 일부 특정 단위실은 조망권, 일조권 및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충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 사항이나 주차장의 구조 등에 따라 위치 등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차충전설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 대수에 전기차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 용도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전기차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경관조명, 옥외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상부(옥상, 외벽 등)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설비 통기 배관, 발전기 연도, 위성 안테나, 공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조망 간섭, 야간조명의 영향, 눈부심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해 일부 특정 단위실은 침해를 받아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설치 용량 및 수신 감도 등에 따라 위치, 개소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상부 옥탑구조물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에너지관련 검토에 따라 본 공사시 설치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무인택배함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내용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무인택배함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등의 천장 내부 공간이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10층 복도 테라스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해당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차제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기계,전기,통신 설비 관련

- 단위실 분전반(「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과 단위실 통신 단자함(「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3의 주) 3」에 의거 단위실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세탁실, 베란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은 건본주택에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실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거실 벽면에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단위실 거실과 각 침실에 설치되는 통합스위치는 조명기구 점등과 소등, 대기전력 차단, 난방 온도조절의 기능이 통합된 제품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을”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 마감재(단위실 분전반, 단위실 통신 단자함, 월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 콘센트, 통합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및 사양은 추가 선택품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하는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 확인,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단위실 전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조명기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단종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모양 포함)
- 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조명은 일괄소등이 불가능하며, “을”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위실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 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수량,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급수,급탕 분배기는 유지관리를 위해 본 공사시 설치층수 또는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 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 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온수분배기 등)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전기쿡탑 설치에 따라, 주방에 가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레인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자체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관, 스프링클러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단위실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의 환기덕트 및 주방,욕실 배기덕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에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실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환기설비가 거실 천정에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소음, 진동 등이 다소 발생됩니다. 또한 설비, 조명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에어컨과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주방 배기 및 욕실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로 설치되며,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기는 거실, 침실 등을 경유하며 침실의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므로 이에 따른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배기는 거실, 침실을 경유하며 침실 또는 실외기실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므로 이에 따른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 덕트, 주방 및 욕실 직배기 덕트가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가스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타입은 욕실 직배기에 따른 덕트 및 배기구가 침실구간에 설치됨에 따라 커텐박스의 깊이나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 및 덕트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냉방전용, 공기청정기능없음)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스탠드 및 벽걸이형 에어컨 개별설치를 위한 냉매 매립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드레인배관은 실외기실 또는 세탁실에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서 기간
제 01292024-104-0001700호	₩ 148,209,53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p>【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p>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 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 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을"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업무시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입니다.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관계자 및 감리관계자 명칭

구 분	회 사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10111-2937831
시행위탁자	(주)인사이트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7길 23, 4층 1호	110111-6940210
시 공 사	에이치엘디엔아이한라(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110111-0274699
분양대행사	에이치앤오파트너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506호	110111-7101663
감 리 사 (건축, 토목)	주식회사 체인지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4층 401호	110111-7373957
감 리 사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주식회사 한백에프앤씨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0길 32	110111-4356344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자 : 코리아신타(주)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2009-0074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타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목·용도·규모 :
 - ①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일원
 - ② 지목 : 대
 - ③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공동주택
 - ④ 규모 : 지하 5층 ~ 지상 최고 24층 2개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정비구역,과밀억제권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현장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일원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
- 분양 홈페이지 : <https://www.마포에피트어바닉.com/>

- **분양문의** : ☎ 1555-3111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에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분양광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